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6월 23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엄셋별·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 
제2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6월 23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민간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·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사고 방지 및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및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 관련 민간 지원 세부내용 규정 신설(안 제10조제3항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### 나. 검토의견

## 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) 주요 내용

-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및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 관련 민간지원 세부내용 규정 신설(안 제10조제3항)
  - 광고물등 정비 및 개선사업
    - 풍수해 대비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
    -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정비
    - 광고물등 디자인 및 제작 공동작업장 설치
   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3)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 민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